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교통관리에 관한 정의규정 및 항공교통흐름 관리에 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하고, 항공교통정책의 목표 및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4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되었던 항공기등의 감항승인 업무를 국토교통부 업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 심의사항, 협의체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등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안 제9조의2)
- 나. 법에서 위임한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하여 무상제공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다. 항공교통흐름관리 권한을 실제 흐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항제5호의2)

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 중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최초의 감항승인 검사업무를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도록 권한 및 업무의 위임 위탁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26조)

마. 국가항행계획 수립·이행 업무 및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장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0항제4호의4 및 5)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무조정실 협의 예정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제77조의 2제4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관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2차관이 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기상청·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지

명하는 사람

3.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단체의 장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추진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진협의체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0조의2(항공정보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경찰청
3. 소방청
4. 산림청
5. 기상청
6. 해양경찰청
7.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 그 밖에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제26조제1항제7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

제26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항공기등, 장비품”을 “장비품”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법 제77조의2에 따른 국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4의5.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

부 칙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9조의2(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u>2. 항공교통관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국가항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협의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 <p><u>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2차관이 된다.</u></p> <p><u>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방부 · 기상청 · 소방청 · 해</u>

양경찰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항공분야 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추진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단체의 장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추진협의체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연구, 사전 검토 및 추진협의체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처리 등을 위하여 추진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추진협의체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0조의2(항공정보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경찰청
3. 소방청
4. 산림청

<신 설>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6. (생략)
7. 법 제24조에 따른 항공기등(항공기, 발동기 및 프로펠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승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 다만, 다음 각 목의 감항승인과 그 감항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인

5. 기상청
6. 해양경찰청
7.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 그 밖에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1. ~ 6. (현행과 같음)
7. -----

-----.

<삭제>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
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
등에 대한 최초의 감항승
인

다.·라. (생략)

8. ~ 60.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
임한다.

1. ~ 5. (생략)

<신설>

6. ~ 12.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
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하여 고시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
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

<삭제>

다.·라. (현행과 같음)

8. ~ 60.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
른 항공교통흐름 관리

6. ~ 12.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장비
품 -----

한 법 제24조에 따른 최초의
감항승인을 위한 검사업무

가. 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
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

나. 법 제22조에 따른 제작증
명을 받아 제작한 항공기
등

다.·라. (생략)

6.·7. (생략)

④ ~ ⑨ (생략)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
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에 위탁한다.

1. ~ 4의3. (생략)

<신설>

<신설>

5.·6. (생략)

<삭제>

<삭제>

다.·라.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⑩ -----

-----.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법 제77조의2에 따른 국
가항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
한 지원 업무

4의5. 법 제83조의3제3항에 따
른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의
운영

5.·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5